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 
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민법상 가족 중 일부 가족이 빠져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민법상 가족 전부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

## 3. 주요내용

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(안 제7조의3 제1항 제1호 다목 개정)

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3제1항제1호다목 중 “직계존비속”을 “직계혈족”으로, “직계비속”을 “직계혈족”으로, “자녀”를 “자녀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의3(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)</p> <p>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은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</p> <p>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·나.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다.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「주민등록법」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, <u>직계존비속</u>, <u>직계비속</u>의 배우자, 형제자매,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<u>자녀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라. (생략)</p> <p>2.·3. (생략)</p>	<p>제7조의3(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)</p> <p>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·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다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<u>직계혈족</u>-- <u>직계혈족</u>-----</p> <p>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<u>자녀</u>, 배우자의 <u>직계혈족</u> 및 형제자매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

② (생 략)

②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307